

IV. 결 론

이상에서 영국의 FSMA2000에서 보험업의 일반성과 특수성을 행위규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이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첫째, 영국의 영업규범은 행위규제에 대한 통합이 가능함을 입증하고 있다. 영국의 영업규범은 행위규제 관련 항목별로 대부분을 통합하였다. 다만, COB중 고객자산, 집합투자기구의 운전자, 수탁자 및 수탁행위, 로이즈 등 통합이 적절하지 않은 특수 영역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둘째, 영국의 영업규범은 규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실현하고 있다. 그 이유는 동일한 기능의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업종, 금융기관의 종류에 구애받지 않고 동일한 내용의 행위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셋째, 영국의 영업규범은 개별 금융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한다. 동일한 기능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개별 금융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보험업의 경우, 투자생명보험은 여타 투자와 마찬가지로 COB에서 규율하면서도 투자생명보험의 특성을 살릴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비투자보험에 대해서는 ICOB에서 별도로 규율한다. 비투자보험에 대해서 별도로 규제한다는 것은 비투자보험이 여타 투자와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셈이다.

넷째, 영국의 영업규범에서 나타나는 보험업의 특수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COB에서 투자생명보험에 관한 것이다. (1)투자생명보험은 지위이분법이 적용되는 일괄상품(packaged product)에 속하기 때문에 여타 투자상품과는 구분된다. (2)투자생명보험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 규정들이 있다. 주요한 것으로는 실시간 금융광고가 가능하다는 점, 영업조건 제공의무가 면제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3)비투자보험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규정들은 다수이다. 실시간 금융광고가 가능하다는 점, 고객을 소매소비자와 기업소비자로 분류한다는 점, 고객에게 위험에

대한 이해를 시킬 필요가 없다는 점, 수수료의 고지가 제한적으로만 적용된다는 점,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은 격지자간 보험매매가 제한된다는 점, 예상수익을 제공에 관한 규제가 없다는 점, 거래와 관리에 관련된 규정들(이익상충, 과당거래 및 승환의 금지, 선행거래, 고객주문 순서, 최선의 집행, 적기의 집행, 병합 및 분배, 일반 소비자의 자신의 집행, 일반소비자에 대한 대여, 증거금 요건, 장외거래증권, 소비자 주문과 집행기록, 개인계정 거래, 프로그램 거래, 비시장가격에 의한 거래)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보험금청구에 대한 처리규정이 적용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향후 금융관련 영업규범을 통합한다면 어떠한 방향과 전략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영업규범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률의 형식으로 존재하도록 해야 한다. 그 결과, 다수의 영업규범들이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으로 존재하는 현상이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영업규범 중 기술적이고 시행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 이하로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첫째 통합금융업법이 지나치게 방대해 질 것이고, 둘째 세부적인 내용마저도 법률에 규정되면 그 개정이 필요한 때마다 국회의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결과 금융환경 변화에 발맞춰 신속하게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 곤란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영업규범이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 아니라 금융감독청(FSA)이 제정한 규정의 형식을 취하는 영국의 사례는 우리나라의 법체계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

둘째, 어떠한 내용으로 영업규범을 통합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내용면에서 보면, 현행 우리의 영업규범을 통합하는 방법이 있고, 영국의 영업규범을 수용하여 통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초기단계에서는 전자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영국의 영업규범의 도입으로 인한 금융업계의 부담감 또는 거부감으로 때문에 현행 우리나라의 영업규범의 통합마저도 곤란해진다면 규제의 형평과 효율이라는 통

합의 제1차적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기단계에서는 통합의 방법, 범위를 중심으로 영국의 영업규범을 참고하는데 그칠 필요가 있다. 내용 면에서 영국의 영업규범을 수용하는 문제는 다음단계에서 다룰 사안이다. 이 때, 영업규범이 국제기준과 정합해야 할 보편성을 띠는지(영국의 영업규범이 국제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포함), 아니면 오히려 영업규범이 국가별 금융환경의 영향을 더 받는지 등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할 것이다.

셋째, 기존의 영업규범을 통합함에 있어서 금융업종별 특성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행위규제의 획일화라는 폐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영국의 영업규범은 금융업종별 특성을 적절히 반영한 매우 성공적 모델이라고 평가된다.